

영등포구의회
제15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4. 1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271 호로 2010년 4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『평생교육법』 제31조제6항에 해당되는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지원 등 개정.
(안 제4조제1항)
- 나. 법적 평생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규정 신설. (안 제4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평생교육법
- 나. 예산조치 : 2010년 예산편성 예정

5. 검토의견

이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6항에 따라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,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이 사항은 없음.

관 계 법 령

■ 평생교육법

[시행 2009.8.9] [법률 제9641호, 2009.5.8, 일부개정]

교육과학기술부 (평생학습정책과), 02-2100-6373, 6379

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경비보조 및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1조 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의 복무·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·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⑤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·절차, 입학자격,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·절차,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⑦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